

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연구위원회 운영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7조에 의거, 의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한 의학교육연구위원회 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구분,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⑤ 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⑥ 위원회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의학교육연구위원회의 기능) 의학교육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의학교육의 최신 동향에 대한 파악과 적용에 관한 사항
- ② 의학교육에서의 연구주제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
- ③ 의학교육연구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본교 의학교육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중요한 결의사항은 사안에 따라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행정 처리업무는 간사가 담당한다.

제5조(기타사항)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